

| 투자 위험 등급<br>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          |       |       |          | 교보약사자산운용(주)는 <u>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u><br>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교보약사 법인MMF 투자신탁 제3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보약사 법인MMF 투자신탁 제3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 | <b>교보약사 법인MMF 투자신탁 제3호</b>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 | 교보약사자산운용(주)   |
| 3. 판 매 회 사                 | : | 각 판매회사 본·지점<br>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교보약사자산운용(주)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 | 2016년 11월 30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 | <b>2016년 12월 18일</b>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 투자신탁 수익증권<br>[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 | 2016년 12월 19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br>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br>나. 투자설명서<br>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br>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br>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한국거래소 |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펀드코드  |
|--------------------|-------|
| 교보약사 법인MMF투자신탁 제3호 | BK059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 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http://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정 보]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6 11. 30)

### 교보약사 법인 MMF 투자신탁 제 3 호(BK059)

|                            |       |          |       |       |          |   |
|----------------------------|-------|----------|-------|-------|----------|---|
| 투자 위험 등급<br>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          |       |       |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 <b>교보약사 법인MMF투자신탁 제3호</b> ’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을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시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b>교보약사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b> 이 위험등급은 판매회사의 위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

##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li> <li>• <b>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b>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b></li> </ul> |  |  |
| 집합투자기구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대부분을 유동성이 풍부한 국공채, 사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며, 투자신탁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75일 이내로 유지합니다.</li> <li>·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b>법인고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b></li> </ul>  |  |  |
| 분류              |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  |  |
| 집합투자업자          | 교보약사자산운용주식회사 [☎ 02-767-9600]  |  |  |
| 모집(판매) 기간       | 모집(매출)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  |
|                 | 2016년 12월 19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  |  |  |
| 효력발생일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  |
|                 | 2016년 12월 18일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 종류(Class)       | -   |  |  |
| 가입자격            | 법인전용  |  |  |
| 판매수수료           | -   |  |  |
| 환매수수료           | -   |  |  |
| 보수<br>(연,<br>%) | 판매  | 0.040%   |  |
|                 | 운용 등  | 0.058% (집합투자업자 0.04%, 신탁업자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008%) |  |
|                 | 기타비용  | -  |  |
|                 | 총보수·비용  | 0.098%   |  |
|                 | 합성총보수·비용  | 0.098%   |  |

|               |   |              |  |
|---------------|---|--------------|--|
| <p>※ 주석사항</p> | <p>주1) 기타비용은 증권거래비용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타비용비율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br/> 주2) 보수 지급시기 : 매 3개월<br/> 주3)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p>                |              |  |
| <p>매입 방법</p>  | <p>• 17시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매입<br/> • 17시 경과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p>  | <p>환매 방법</p> | <p>• 17시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2영업일 대금 지급<br/> • 17시 경과후 : 3영업일 기준가 3영업일 대금 지급</p> |
| <p>기준가</p>    | <p>•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br/> •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p> |              |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1조에서 규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 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용 MMF**입니다. 수익자는 금융시장에서 단기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함에 따른 가격의 변동위험 및 발행인의 부도, 채무불이행, 파산 등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공채, 특수채, 사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 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 전용 MMF** 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1) 안정적인 수익 추구

- 엄격한 신용 및 시장위험관리와 펀드 듀레이션 조절전략을 통해 투자위험 최소화
- 철저한 거시경제 및 금리요인 분석 등을 통한 펀드 듀레이션 조절전략
- 단기자금시장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종목의 발굴 및 편입

##### (2) 철저한 위험관리

- 단기금융투자신탁의 수시입출금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유동성 관리
- 투자가능 자산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안정적 위험관리

### 3.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2015.11.20기준)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
| 정관옥 | 1968 | 이사 | 15개                | 15,623억 원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br>-하나UBS자산운용<br>채권운용팀,글로벌운용팀<br>-SH공사 자금관리팀<br>-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2팀 |

|  |  |  |  |  |                                       |
|--|--|--|--|--|---------------------------------------|
|  |  |  |  |  | -알파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팀<br>-(현)교보약사자산운용 채권운용팀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2) 상기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 1. 주요 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 위험                       |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

주1)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위험관리

교보약사자산운용(주)는 투자자 보호을 위하여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정책 및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전략의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직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풀 및 투자한도 설정 등 각종 위험관리 방안의 시행과 내부통제조직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하여 투자위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투자위험 등급 분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잔존기간이 짧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 및 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입니다.
- **교보약사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6등급(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경우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에 기초하여 위험등급이 결정

정되기 때문에 매 결산시점마다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인 교보악사자산운용(주)가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매회사가 제시하는 위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시기 전에 판매회사의 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인 교보악사자산운용(주)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매회사가 제시하는 위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시기 전에 판매회사의 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 1.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yoboaxa-im.co.kr](http://www.kyoboaxa-i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yoboaxa-im.co.kr)



# [목 차]

|  |           |
|--|-----------|
| <b>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b> .....            | <b>11</b> |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11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 11        |
| 3. 모집예정금액 .....                              | 11        |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 11        |
| 5. 인수에 관한 사항 .....                           | 11        |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 11        |
| <br>   |           |
| <b>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b> .....              | <b>12</b> |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12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12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 12        |
| 4. 집합투자업자 .....                              | 12        |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12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 13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 13        |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 13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 17        |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 18        |
|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                      | 22        |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 25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26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 28        |
| <br>   |           |
| <b>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b> ..... | <b>30</b> |
| 1. 재무정보 .....                                | 30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 30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 30        |
| <br>   |           |
| <b>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b> .....          | <b>31</b> |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31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 33        |
|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        | 33        |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 34        |
|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 35        |

|                                      |           |
|--------------------------------------|-----------|
| <b>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b> | <b>36</b> |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36        |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 40        |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 41        |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 44        |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 45        |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 46        |
| <br>                                 |           |
| <b>[붙임] 용어 풀이 .....</b>              | <b>47</b>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집합투자기구 명칭   | 교보약사 법인MMF투자신탁 제3호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K059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  |
|------------|--|
|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9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모집장소       | 판매회사의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 참고 |
| 모집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1) 모집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집합투자기구 명칭   | 교보약사 법인MMF투자신탁 제3호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K059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
| 시행일        | 변경사항 |
| 2016.12.00 | 최초설정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사명      | 교보약사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br>대표전화 : ☎ 02-767-9600<br>홈페이지 : www.kyoboaxa-im.co.kr |

주1)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2016.11.30기준)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
| 정관옥 | 1968 | 이사 | 15개                | 15,623억 원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br>-하나UBS자산운용<br>채권운용팀,글로벌운용팀<br>-SH공사 자금관리팀<br>-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2팀<br>-알파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팀<br>-(현)교보약사자산운용 채권운용팀 |

-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2)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3) 상기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4)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 책임운용전문인력 | 운용기간 |
|----------|------|
| -        |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신탁(MMF), 개방형, 추가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1조에서 규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 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용 MMF**입니다. 수익자는 금융시장에서 단기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단기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함에 따른 가격의 변동위험 및 발행인의 부도, 채무불이행, 파산 등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 투자대상 내역   |
|------|----------|---|
| ①    | 양도성 예금증서 | 잔존만기가 6개월 이내  |
| ②    | 채무증권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채권(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 ③    | 어음       | 잔존만기 1년 이내인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기업어음증권은 제외)   |
| ④    | 집합투자증권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 ⑤    | 환매조건부매매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매수 하는  |

|   |                                |  |
|---|--------------------------------|--|
|   |                                | 경우   |
| ⑥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치 등                |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br>-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
| ⑦ | 전자단기사채 등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   |
| ⑧ | 신탁업자 고유재산 거래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⑨ |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 취득                 | 집합투자업자는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음.   |
| ⑩ | 채무증권 신용등급 (양도성 예금증서 및 어음 등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 등급"이라 한다) 이내이어야 함</li> <li>•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li> <li>-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li> <li>-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li> </ul> </li> <li>•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li> <li>•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함.</li> </ul> |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종류 |                | 투자제한 주요내용  |
|----|----------------|--|
| ①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

|   |              |  |
|---|--------------|--|
|   |              |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p>   |
| ② | 동일인 발행한 채무증권 | <p>-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 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 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행 위.</p> <p>가. 채무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 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p> <p>나. 어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p> <p>다.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0 분의 5). 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함.</p> |
| ③ | 동일인과의 거래     | <p>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 무증의 취득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봄</p> <p>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 대출한 금액</p> <p>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 30일 이내일 것</li> <li>-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li> <li>-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 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li> </ul>  |
| ④ | 환매조건부 매도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

|   |               |  |
|---|---------------|--|
| ⑤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 ⑥ |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⑦ | 다른자산에의 투자자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br>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br>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⑧ | 가중평균잔존 만기     |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75일을 초과하는 행위  |
| ⑨ | 국채증권          |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
| ⑩ | 채무증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채무증권(법 제43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
| ⑪ |               | 다음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br>1. 현금<br>2. 국채증권<br>3. 통화안정증권<br>4. 잔존만기가 1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r>가.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br>나.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br>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br>라. 전자단기사채<br>5. 환매조건부매수<br>6. 단기대출<br>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예의 예치 |
| ⑫ |               | 다음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br>1. 위의 ⑫1.부터 3.에 해당하는 것<br>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위의 ⑫ 4.에 해당하는 것<br>3. 위의 ⑫ 5.부터 7.에 해당하는 것   |
|   | 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 | - 위의 ③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위의 ⑥에서 정한 한도를 초  |



|  |
|--|
| 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공채, 특수채, 사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 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 전용 MMF**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1) 안정적인 수익 추구

- 엄격한 신용 및 시장위험관리와 펀드 듀레이션 조절전략을 통해 투자위험 최소화
- 철저한 거시경제 및 금리요인 분석 등을 통한 펀드 듀레이션 조절전략
- 단기자금시장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종목의 발굴 및 편입 예정

#### (2) 철저한 위험관리

- 단기금융투자신탁의 수시입출금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유동성 관리
- 투자가능 자산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안정적 위험관리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위험관리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편입종목 제한 및 편입비율 제한
- 펀드 듀레이션 및 가중평균만기 관리
- 적절한 유동성 관리 : 고객의 입출금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유 현금성 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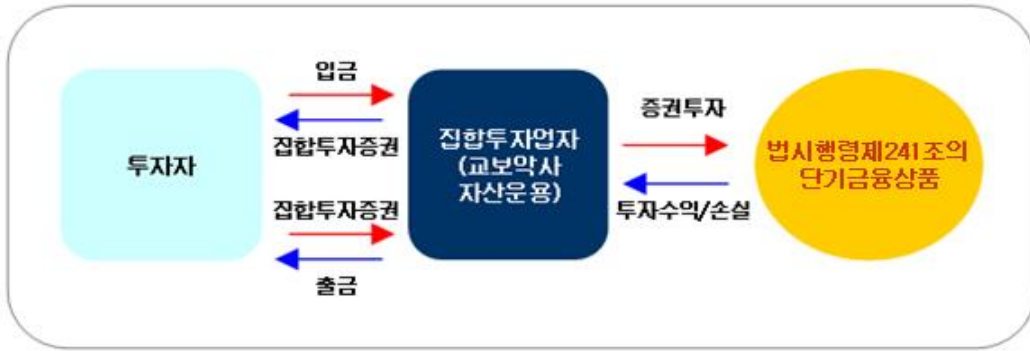
### 다.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별도의 비교지수는 없으나,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율에 의하여 수익이 결정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아닌 장부가가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 등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 위험      |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해당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
|--------------------------------|--|
|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장부가와 시가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투자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환매연기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 위험                                 | 추가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
|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및 미국납세의무자 (US Taxpayers) | <p><b>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b></p> <p>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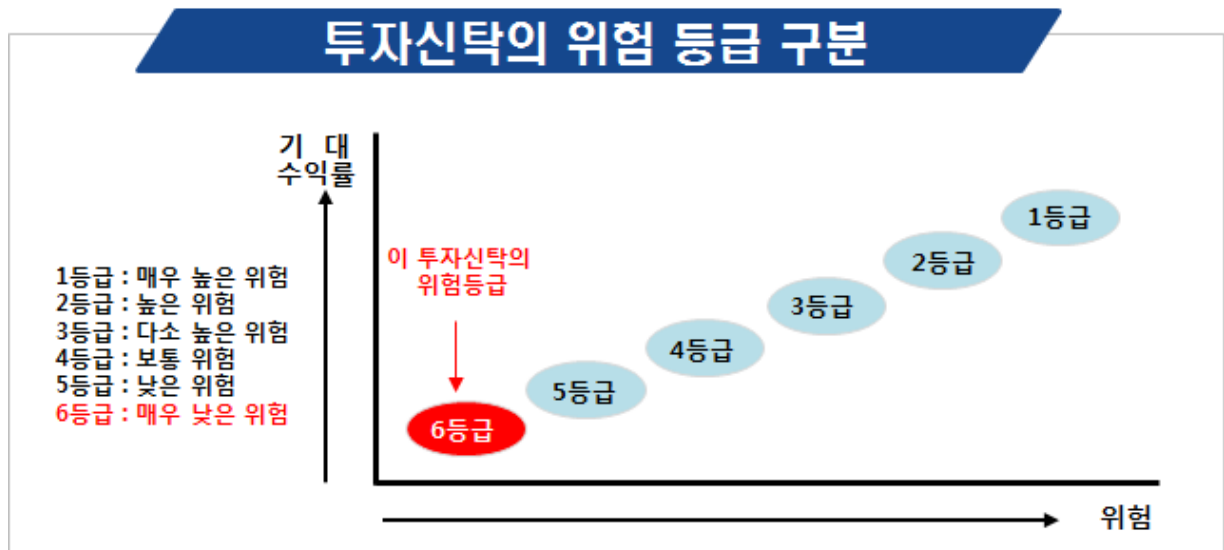
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십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수준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환위험 등이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잔존기간이 짧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 및 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입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신용등급이 상위 2개 등급으로 제한되고 시가평가도 배제되어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장부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으로 단기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다만, 시장이자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신용등급 하락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본손실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잘 아는 **법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교보약사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6등급(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경우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에 기초하여 위험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 결산시점마다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인 교보약사자산운용(주)가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매회사가 제시하는 위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시기 전에 판매회사의 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보약사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 위험등급 | 위험수준     | 분류기준   |
|------|----------|--|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버리지형 등 투자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집합투자기구</li> <li>· 최대손실률이 20% 이상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매우 높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
| 2등급  |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자산 투자비중이 8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높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
|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 8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li> <li>· 최대손실률이 20% 미만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다소 높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
| 4등급  | 중간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자산 투자비중이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li> <li>· 중위험자산 투자비중이 6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li> <li>· 차익거래형 등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중간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
| 5등급  | 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위험자산 투자비중이 6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li> <li>· 원금보전 추구형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낮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
| 6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증권에의 투자가 단기 국공채로 한정된 집합투자기구</li> <li>·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매우 낮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

주) 1. 위험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함

가.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BB+등급 이하의 채권, 파생상품 등

나. 중위험자산 : BBB-등급 이상의 채권, A3등급 이상의 CP/전자단기사채,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등

- 다.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A-등급 이상의 채권, A2-등급 이상의 CP/전자단기사채, 현금성 자산 등
- 2.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156주)간 펀드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위험등급 분류기준표의 등급값을 비교하여 위험등급을 결정함
- 3.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높은 위험등급을 적용함
-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투자국가, 환헤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함
- 5. 이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교보약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6. 실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는 집합투자기구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으로 이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7. 이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교보약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따라 분류함

##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절차 및 가능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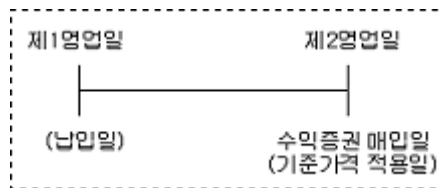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매입의 제한

-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② 17시(오후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④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주1) 집합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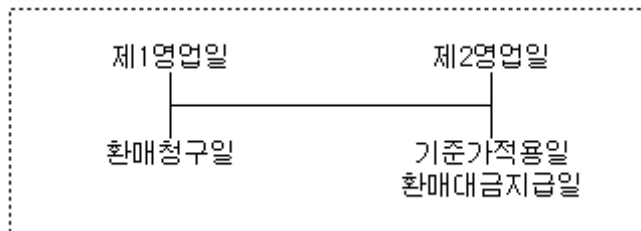
## 나. 환매

### (1) 수익증권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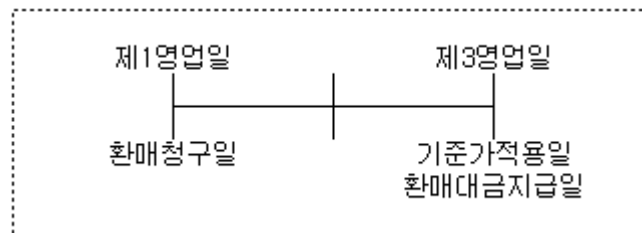
###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에 환매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수령일은 환매청구후 제2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17시(오후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환매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수령일은 환매청구후 제3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주1)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6) 수익증권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 (17시 경과후에 환매 청구한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7) 수익증권 환매연기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법시행령 제256조)]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 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또는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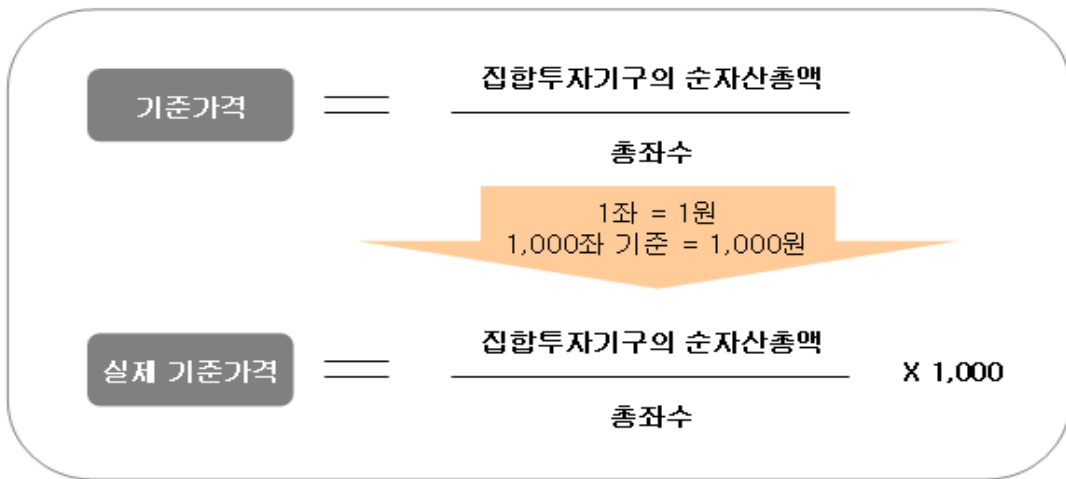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
| 공시장소 |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br>[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판매회사 영업점,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집합투자재산은 장부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 <sup>주1)</sup> 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
| 채무증권<br>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

주1) 유효이자율법 :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한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자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임.

(2) 장부가격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어 그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 집합투자기구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3)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br>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
| 비상장채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br>(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
| 기업어음 또는 금융<br>기관이 발행한 채무<br>증서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이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지급비율    | 부과기준 |
|---------|---------|------|
| 선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매입시  |
| 후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환매시  |
| 전환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전환시  |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환매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율(연간,%) | 부과기준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040      | 매3개월 후급 |
| 판매회사보수     | 0.040      | 매3개월 후급 |
| 신탁업자보수     | 0.010      | 매3개월 후급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08      | 매3개월 후급 |
| 기타비용       | -          | 사유발생시   |
| 총 보수·비용 비율 | 0.098      | 매3개월 후급 |
| 증권거래비용     | -          | 사유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타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 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예시)]**

| 구분            | 투자기간 (단위:천원) |     |     |      |
|---------------|--------------|-----|-----|------|
|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0           | 32  | 55  | 126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비용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기타 비용)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단,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나. 과세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 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 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가. 요약재무정보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나. 대차대조표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다. 손익계산서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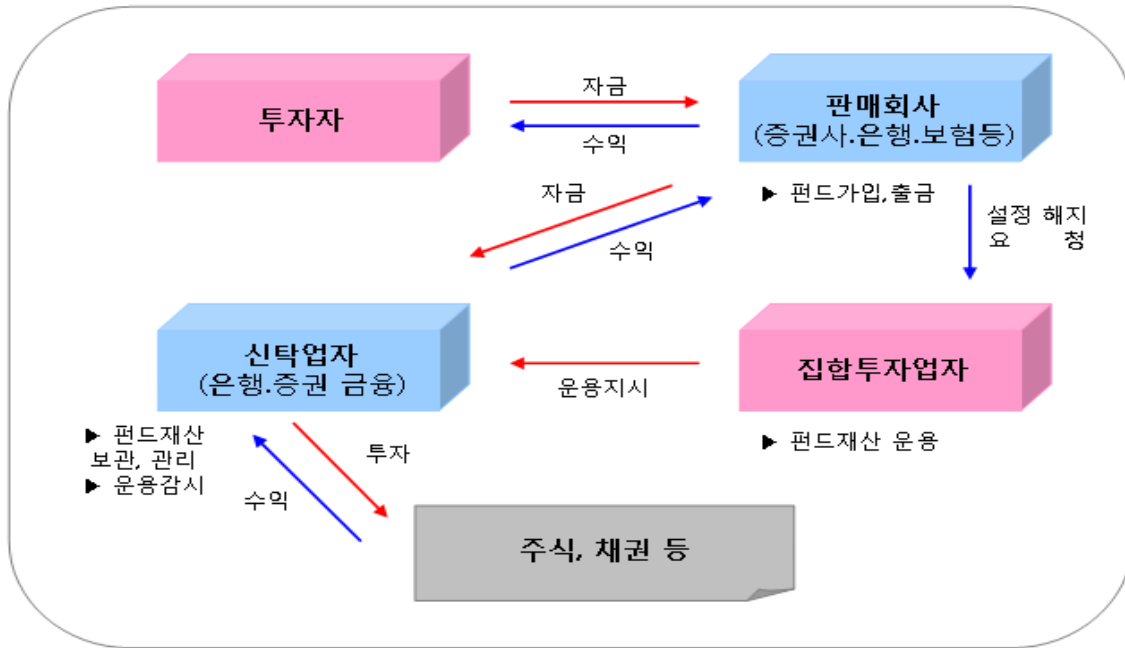
#### 나. 연도별 수익률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교보약사자산운용(주)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
| 연락처      | (02) 767-9600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yoboaxa-im.co.kr  |
| 회사연혁     | 1988.07.07 교보투자자문(주) 설립 (교보생명 전액 출자)<br>1996.07.30 교보투자신탁운용(주) 출범 (납입자본금 300억원)<br>2008.08.28 상호변경 (교보투자신탁운용 → 교보약사자산운용) |
| 자본금      | 300억원  |
| 주요주주현황   | 교보생명(주) 50%, AXA Investment Managers 50%   |

#### 나. 주요업무

#####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등

#####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기준가격계산에 대한 업무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신한아이타스(주)**에 위탁하였으며, 위탁에 대한 책임은 교보약사자산운용(주)에 있습니다.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 요약 대차대조표             |            |            | 요약 손익계산서     |                         |                         |
|----------------------|------------|------------|--------------|-------------------------|-------------------------|
| 항 목                  | '15.12.31  | '14.12.31  | 항 목          | '15.01.01~<br>'15.12.31 | '14.01.01~<br>'14.12.31 |
| 현금 및 예치금             | 543        | 537        | 영업수익         | 254                     | 229                     |
| 유가증권                 | 3          | 3          | 영업비용         | 171                     | 159                     |
| 대출채권                 | 5          | 3          | 영업이익         | 82                      | 70                      |
| 유형자산                 | 9          | 7          | 영업외수익        | 0                       | 0                       |
| 기타자산                 | 69         | 64         | 영업외비용        | 2                       | 1                       |
| <b>자산총계</b>          | <b>629</b> | <b>614</b> | 법인세비용        | 81                      | 68                      |
| 예수부채                 | 0          | 0          | 차감전이익        |                         |                         |
| 기타부채                 | 52         | 47         | <b>당기순이익</b> | <b>62</b>               | <b>52</b>               |
| <b>기타부채</b>          | <b>52</b>  | <b>47</b>  |              |                         |                         |
| 자본금                  | 300        | 300        |              |                         |                         |
| 자본잉여금                | 0          | 0          |              |                         |                         |
| 이익잉여금                | 278        | 267        |              |                         |                         |
| 기타포괄손익<br>누계액        | -1         | -1         |              |                         |                         |
| <b>자본총계</b>          | <b>578</b> | <b>567</b> |              |                         |                         |
| <b>부채 및<br/>자본총계</b> | <b>629</b> | <b>614</b> |              |                         |                         |



라. 운용자산규모 (2016.10.31기준 / 단위:억원 / 투자일임자산 제외)

| 구분  | 증권     |          |          |        |     | 단기<br>금융 | 파생형    | 부동<br>산 | 특별<br>자산 | 혼합<br>자산 | 합계      |
|-----|--------|----------|----------|--------|-----|----------|--------|---------|----------|----------|---------|
|     | 주식     | 혼합<br>주식 | 혼합<br>채권 | 채권     | 재간접 |          |        |         |          |          |         |
| 수탁고 | 10,851 | 376      | 3,280    | 52,835 | 264 | 29,563   | 27,385 | 0       | 0        | 2,151    | 126,705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br>☎ (02) 3770-6800 |
|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 www.ksfc.co.kr                             |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신한아이타스(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 (02)2168-0400  |
| 회사연혁등<br>(홈페이지 참조) | 2000.06 설립<br>2000.09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br>2008.05 주식회사 신한은행 자회사 편입<br>(www.shinhanaitas.co.kr) |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br>☎ 02-399-3350 |
| 홈페이지 참조  | www.koreabp.com                           |
| 회사연혁     | 2000년 5월 설립                               |

|          |  |
|----------|--|
| 회사명      | NICE피앤아이(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br>☎ 02-398-3900 |
| 홈페이지 참조  | www.nicepni.com                        |
| 회사연혁     | 2000년 6월 설립                            |

|          |  |
|----------|--|
| 회사명      | KIS채권평가(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br>☎ 02-3215-1433 |
| 홈페이지 참조  | www.bond.co.kr                         |
| 회사연혁     | 2000년 6월 설립                            |

|          |                                       |
|----------|---------------------------------------|
| 회사명      | 에프앤자산평가(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br>☎ 02-721-5300 |
| 홈페이지 참조  | www.fnpricing.com                     |
| 회사연혁     | 2011년 6월 설립                           |

###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③연기투자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 수익자는 연기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일 전 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및 기타 수익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집합투자계약의 개정

### (4)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합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시행령 제223조 제3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 등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

업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교보약사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yoboaxa-im.co.kr](http://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익자총회사항포함),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비교지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중요 투자전략의 변경은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이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교보약사자산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yoboaxa-im.co.kr](http://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 공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③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①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 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회계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

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인의 범위]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구분           | 내용  |
|--------------|---|
| 투자증권<br>거래   | 1) 일반주식매매<br>-거래증권사 :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주문집행능력, 매매체결수수료, 정보제공 및 Settlement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br>-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br>2) Cyber주식매매<br>-거래증권사 : Cyber 주식매매를 시행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탁수수료, 매매 업무 수행 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br>-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br>3) 일반채권 매매<br>-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br>-CD, CP의 주요 중개기관인 신한, 외환, 우리, 산업, 기업은행은 당사 필요에 따라 거래증권사 선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거래사에 포함<br>-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신용분석가<br>4) 신규 발행 채권 인수<br>-국고채를 제외한 신규발행물 인수시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 대상으로 선정된 증권사 이외의 증권사와 거래 가능<br>5) 외화표시채권 매매<br>-외화표시채권은 매매와 중개기관의 특성상 거래시 운용본부장의 개별 승인을 득하여 거래 가능 |
| 장내파생<br>상품거래 | 1)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br>-거래증권사 :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영업능력, 위탁수수료,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br>2)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br>-선물중개사 :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 / -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붙임] 용어 풀이**

| 용 어       | 내 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투자회사      |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폐쇄형       |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

|                  |  |
|------------------|--|
|                  |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한국투자금융협회<br>펀드코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
| 금리스왑             |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  |